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조례안 개요

- 제안자 : 심현정 의원
- 제안일자 : 2024. 10. 4.
- 회부일자 : 2024. 10. 14.
- 상정일자 : 2024. 10. 14.

2. 제안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권고에 따라 평창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실천규범 및 행동강령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 삭제
(안 제9조 ~ 제13조, 제20조, 제28조, 별지 2~5, 13)
- 의원 비위행위 확대 및 비위행위별 상응하는 징계기준 마련
(안 제8조, 별표 3)
-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 수정(별표 4)
-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문구 수정(별표 5)

4. 검토의견

가. 관련 근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별도로 제정되었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정비가 필요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 및 기준에 관하여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있음.

나. 입법의 취지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청렴한 의정활동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 삭제
 1.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안 제9조)
 2.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안 제10조)
 3.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안 제11조)
 4. 가족 채용 제한(안 제12조)
 5. 수의계약 체결 제한(안 제13조)

6. 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의 금지 등(안 제20조)

7.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안 제28조)

8. 관련 규정에 따른 별지 서식 삭제

- 안 제9조 ~ 제11조와 관련된 별지 2호 ~ 5호 및 13호 삭제

○ 의원의 비위행위 항목 확대 및 비위행위별 구체적인 징계기준 마련

1. 비위행위 항목 확대

-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안 제8조)

2. 비위행위별 구체적인 징계기준 신설(별표3)

○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 변경

1. 음식물 가액 범위 상향

- (당초) 3만원 → (변경) 5만원

2.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의 범위 확대

- (당초) 물품 → (변경) 물품 및 용역상품권 포함(금액상품권 제외)

3.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범위 상향 및 상품권 추가

- (당초) 10만원 → (변경) 15만원

-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추가

4. 설날·추석 기간 가액 범위 상향(30만원)

○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문구 수정

5.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 및 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 법체계의 적합성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이기에 개정이 가능하다고 사료됨.